

제245회 정례회
2005. 12. 12(월)

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 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보완·정비하려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안 제1조의 목적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등을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의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
- 제4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

- 안 제29조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, 학생회관, 학생야영장, 교직원복지회관을 두고
- 안제30조 내지 안제33조는 도서관, 학생회관, 학생야영장, 교직원복지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 및 명칭 등을 정하였습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소속기관명칭의 사용 및 인용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